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1가단50743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아람, 김무훈

변론 종결2022. 6. 14.

판결 선고2022. 7. 5.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2,383,639원 및 그중 69,222,319원에 대하여 2020. 11. 13.부터 2021. 4. 26.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2020. 11.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0. 11. 19. 접수 제203441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들은 2007. 11.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는데, 2021. 3. 9. 수원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2) 피고들은 2012. 11.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A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은행에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피고 A은 2020. 11. 19. 피고 B에게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4)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사건 부동산의 2021. 1.경의 시세는 1억 500만 원이다),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E호(2021. 3.경의 시세는 6,400만 원이다),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G호(2021. 2.경의 시세는 9,100만 원이다)가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원고 등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310,121,35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7, 9,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및 피고 A의 무자력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미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있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될 경우,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이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나) 재산분할대상

피고들의 이혼 당시 재산분할대상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피고 A	적극재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5,250만
천안 D아파트	6,400만		
천안 F아파트	9,100만		
소극재산	채무	310,121,356	
	순 재산(적극재산-소극재산)	-102,621,356	
피고 B	적극재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5,250만
소극재산	없음	0	
	순 재산(적극재산-소극재산)	5,250만	
순 재산 합계	-50,121,356		

(다) 재산분할비율

피고 A이 이혼 전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이는 위 이혼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 사실, 위 인정 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약 14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미성년인 자녀 2명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에 이른 점, ② 피고 A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였고, 피고 B은 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분할대상 재산 중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하는 등으로 특유재산이라고 볼 만한 것은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은 혼인기간 중 이룩한 공동재산 중 각 1/2 상당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재산분할의 상당성 여부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앞에서 본 표에 의하면 피고 A은 피고 B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는바, 이 사건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서 그 전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 A의 사해의사 및 피고 B의 악의 피고 A은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는바, 피고 A은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 B은 피고 A의 채권채무관계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터 잡아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0. 11. 19.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건 재산분할)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춘수

별지